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19.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5.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5.3.

다. 상정일자 :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2019.5.14.)

상정, 심사, 보류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2019.6.1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조만호】

가. 제안이유

-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제도적 근거 마련하자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4조~안 제6조)
- 마포구협치회의의 설치와 기능, 구성 (안 제7조~안 제9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의장의 직무 (안 제10조~안 제12조)
- 회의 개최 및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의견청취 등
(안 제13조~안 제16조)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안 제17조)
- 협치조정관 (안 제18조)
-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및 정책평가(안 제19조~안 제20조)
-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등
(안 제21조~안 제24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구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주요내용으로는
 - 조례안 구성을 보면 1장 총칙, 2장 마포구협치회의, 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과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민관협치에 대한 정의 및 기본원칙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관협치의 기본 원칙은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민으로 하여금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임.

- 안 제5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 수립, 시행, 민관협치 환경조성과 참여자들의 역량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협치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위촉 해제 관련하여 규정함.

협치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며 의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공동의장이 되도록 하여 민관협치의 취지를 강화함.

당연직 위원은 협치업무 담당국장과 협치조정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구의원 등으로 하였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7조는 민관협치활성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18조는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협치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협치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9조는 협치사업의 행정지원조직 설치·운영과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20조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과 관이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정책평가를 시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22조는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민간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
- 안 제24조는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협치백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으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 조례의 주요내용인 마포구협치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은 관계 법령을 위반은 없으며, 협치추진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협치조정관 채용 시 다양한 경력의 가진 경험자를 선발하여 모든 구민들이 동등하고 수평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진정한 협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협치의 주체, 범위, 방식, 책임에 관하여 협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앞으로 지속적인 고민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